

1. 개정이유

기존에 시설물 안전점검 대행 업무를 수행하던 유지관리업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리·규율되고 있었는데, 「건설산업기본법」상 유지관리업종이 폐지됨에 따라 유지관리업자가 수행하던 안전점검 대행 업무를 전담하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의 등록에 관한 규정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신설된 바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지침상 유지관리업자에 관한 규정 중 “유지관리업자”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변경하여 개정된 법체계와 일관성을 갖추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지관리업자”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변경하여 개정된 법체계와의 일관성을 도모함(안 제3조제1항제5호 등)

나. 긴급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실시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반영함(안 제1조)

다. 정밀안전점검·진단의 실시 결과를 평가한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대상을 현행 규정상 이의신청의 주체인 점검·진단기관으로 변경하여, 이의신청 결과를 신속히 알 수 있도록 함(안 제78조 제8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2조”를 “제12조, 제13조”로, “제37조”를 “제37조, 제40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유지관리업자”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한다.

제63조제1호마목 중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국토안전관리원·관리주체”를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국토안전관리원·관리주체”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유지관리업자가”를 “안전점검전문기관이”로 한다.

제78조제2항 진단 중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국토안전관리원”을 “안전진단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지도·감독기관”을 “시설물 관리주체와 점검·진단기관”으로 한다.

제82조제5항 중 “권고하고나”를 “권고하거나”로 한다.

제86조제4호 중 “시설물 유지관리업체”를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실시 시기(제13조제1항 관련)

| 안전 등급 | 정기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 정밀안전진단 | 성능평가 |
|-----------|-----------|-----------|-----------|-----------|--------------|
| | | 건축물 | 그 외 시설물 | | |
| A등급 | 반기에 1회 이상 | 4년에 1회 이상 | 3년에 1회 이상 | 6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
| B·C 등급 | | 3년에 1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5년에 1회 이상 | |
| D·E 등급 | | 1년에 3회 이상 | 2년에 1회 이상 | 1년에 1회 이상 | |

비고

1. 안전등급이란 영 제12조 및 영 별표 8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말한다.
2. 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부터 최초 안전등급이 지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3.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중 D·E등급 시설물의 정기점검은 해빙기·우기·동절기 전 각각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해빙기 전 점검시기는 2월·3월로, 우기 전 점검시기는 5월·6월로, 동절기 전 점검시기는 11월·12월로 한다.
4. 공동주택의 정기안전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으로 같음한다.
5.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 5의2.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정기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제3종시설물의 최초 정밀안전점검은 해당 정기안전점검을 완료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밀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6.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최초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및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7. 최초로 실시하는 성능평가는 성능평가대상시설물 중 제1종시설물의 경우에는 최초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때, 제2종시설물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때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및 사용승인 후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성능평가대상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때에 실시한다.
8. 위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는 이전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밀안전점검 실시 주기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제15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주기를 정한다.
9.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10.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부턴 6개월 전 이내에 그 실시 주기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정밀안전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11. 성능평가 실시 주기는 이전 성능평가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2. 증축, 개축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하여 공사 중이거나 철거예정인 시설물로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별표 9] 안전점검등의 과업내용 (제18조 관련)

1. 정기안전점검의 과업내용

(현행과 같음)

2.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의 과업내용

| 과업구분 | 내 용 | | | | | | | | |
|--------------|---|--------------|--|--------------|---|---------|---|-----------|--|
| 1. 기본과업 | <p>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은 최소필요 조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p> <table border="1" data-bbox="245 692 1489 1496"> <tr> <td data-bbox="245 692 475 972">가. 자료수집 및 분석</td> <td data-bbox="475 692 1489 9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td> </tr> <tr> <td data-bbox="245 972 475 1256">나. 현장조사 및 시험</td> <td data-bbox="475 972 1489 12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 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td> </tr> <tr> <td data-bbox="245 1256 475 1447">다. 상태평가</td> <td data-bbox="475 1256 1489 14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관조사 결과 분석 · 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td> </tr> <tr> <td data-bbox="245 1447 475 1496">라. 보고서 작성</td> <td data-bbox="475 1447 1489 14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td> </tr> </table> | 가. 자료수집 및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 나. 현장조사 및 시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 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 다. 상태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관조사 결과 분석 · 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 라. 보고서 작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
| 가. 자료수집 및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 | | | | | | | |
| 나. 현장조사 및 시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 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 | | | | | | | |
| 다. 상태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관조사 결과 분석 · 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 | | | | | | | |
| 라. 보고서 작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 | | | | | | | |
| 2. 선택과업 | <p>선택과업은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정밀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상 시설물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245 1641 1489 2009"> <tr> <td data-bbox="245 1641 475 1738">가. 자료수집 및 분석</td> <td data-bbox="475 1641 1489 17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수리·수문 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 실측도면 작성(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반드시 실측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td> </tr> <tr> <td data-bbox="245 1738 475 2009">나. 현장조사 및 시험</td> <td data-bbox="475 1738 1489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 또는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전체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 및 영상분석(외관조사망도 작성 포함) ·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해체 등 ·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 조사부위 표면청소 </td> </tr> </table> | 가. 자료수집 및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수리·수문 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 실측도면 작성(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반드시 실측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나. 현장조사 및 시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 또는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전체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 및 영상분석(외관조사망도 작성 포함) ·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해체 등 ·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 조사부위 표면청소 | | | | |
| 가. 자료수집 및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수리·수문 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 실측도면 작성(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반드시 실측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 | | | | | | |
| 나. 현장조사 및 시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 또는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전체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 및 영상분석(외관조사망도 작성 포함) ·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해체 등 ·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 조사부위 표면청소 | | | | | | | | |

| 과업구분 | 내 용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 수중조사(떨물 시 바닥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이 있는 항만시설물은 4년에 1회 이상 수중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종 하천교량의 경우, 하자담보기간 완료 전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에서 반드시 수중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 수중조사 이후에 하상정비계획 또는 준설 등에 의하여 교량주변에 하상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교량이 위치한 하천에서 계획홍수량 이상의 홍수가 발생했을 경우, 교량에 인접하여 교량확장, 철도 복선화 공사 등으로 인한 기초공사가 시행되었을 경우에는 수중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최초 수중조사결과 기초부의 손상(박리, 박락, 침식 등), 열화 진전이 예상되는 경우, 기초부 염화물 상태평가 기준이 C이하로 부식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안전성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시험 |
| 다. 안전성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한 부위의 구조·지반·수리·수문 해석 등 안전성평가 ·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경우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평가 |
| 라. 보수·보강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보강 방법 제시 |

3. 정밀안전진단 과업내용

| 과업구분 | 내 용 |
|--------------|---|
| 1. 기본과업 | <p>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은 최소필요 조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p> |
| 가. 자료수집 및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 시공·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
| 나. 현장조사 및 시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 상태 등 · 현장 재료시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크리트 시험 :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초음파전달속도시험 등), 탄산화 깊이 측정, 염화물함유량시험 - 강재 시험 : 강재 비파괴시험(시험량, 시험부위 등 세부사항은 세부지침 참조) -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작동유무 |

| 과업구분 | 내 용 |
|---------------|---|
| 다. 상태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관조사 결과분석 ·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 분석 · 콘크리트 및 강재 등의 내구성 평가 ·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
| 라. 안전성 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시험, 측정 결과의 분석 · 기존의 구조계산서 또는 안전성평가 자료 분석 · 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평가 검토 ·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에 대한 소견 |
| 마. 종합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의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 안전등급 지정 |
| 바. 보수·보강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보강 방법 제시 |
| 사. 보고서 작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
| 2. 선택과업 | <p>선택과업은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상 시설물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p> |
| 가. 자료 수집 및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수리·수문 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 실측도면 작성(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반드시 실측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 나. 현장조사 및 시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기술 또는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전체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 및 영상분석(외관조사망도 작성 포함) · 시료채취 및 실내시험 · 재하시험 및 계측 · 지형, 지질, 지반조사 및 탐사, 토질조사 · 수중조사 (제1종 하천교량의 경우, 최초 정밀안전진단 시에는 반드시 수중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 정밀안전진단 이후에 하상정비계획 또는 준설 등에 의하여 교량주변에 하상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교량이 위치한 하천에서 계획홍수량 이상의 홍수가 발생했을 경우, 교량에 인접하여 교량확장, 철도 복선화 공사 등으로 인한 기초공사가 시행되었을 경우에는 수중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최초 수중조사결과 기초부의 손상(박리, 박락, 침식 등), 열화 진전이 예상되는 경우, 기초부 염화물 상태평가기준이 C이하로 부식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누수탐사 · 침하, 변위, 거동 등의 측정 (안전점검 실시결과,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평가한 경우 필수) ·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 수리·수충격·수문조사 |

| 과업구분 | 내 용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해체 등 •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 조사부위 표면청소 •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 기계·전시설비 및 계측시설의 성능검사 또는 시험계측(건축물 제외) • 기본과업 범위를 초과하는 강재비파괴시험 • CCTV 조사, 단수시키지 않는 내시경 조사 등 •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필요한 조사·시험 |
| 다. 안전성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지반·수리·수문 해석 (구조계의 변화 또는 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필수) • 구조 안전성평가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의 전문가 자문 • 내진성능 평가 및 사용성 평가 • 제시한 보수·보강방법에 따라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평가 |
| 라. 보수·보강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진보강 방안제시 • 시설물 유지관리 방안 제시 |

[별표 13] 안전점검등 실시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36조제1항 관련)

| 구 분 | 내 용 |
|-----------------------------|---|
| 1. 제3종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보고서 | |
| 가. 서두 |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문(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 나. 현장조사 |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내용을 정기점검표를 이용하여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점검표 |
| 다.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제3종시설물에 한함) |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등급 지정 |
| 라. 종합결론 및 건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종합결론 ·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안전등급이 변경시 사유 · 기타 필요한 사항 |
| 마. 부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지시서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외관조사 사진첩 · 사전조사 자료 일체 |
| 2.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 |
| 가. 서두 |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문(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 정밀안전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 구 분 | 내 용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
| 나. 정밀안전점검의 개요 | <p>정밀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기기 현황 • 점검 수행일정 |
| 다. 자료수집 및 분석 | <p>정밀안전점검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
| 라. 현장조사 및 시험 | <p>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
|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 <p>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 안전등급 지정 |
| 바. 시설물의 안전성평가(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시행방법을 검토 |
| 사. 종합결론 및 건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
| 아. 부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지시서 • 외관조사망도 |

| 구 분 | 내 용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시험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 • 기타 참고자료 (정밀안전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
| 3.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 |
| 가. 서두 | <p>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문(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의 장) • 정밀안전진단 결과표 (안전등급)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정밀안전진단 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
| 나.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 <p>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진단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 진단 수행일정 |
| 다. 자료수집 및 분석 | <p>정밀안전진단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
| 라. 현장조사 및 시험 | <p>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분석 |

| 구 분 | 내 용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측정결과 분석 |
| <p>마. 시설물의 상태평가</p> | <p>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정 |
| <p>바. 시설물의 안전성평가</p> | <p>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재하시험 및 계측 결과분석 · 지형, 지질, 지반, 토질조사 등의 결과분석 · 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 수문, 수리 등 해석결과 및 분석 (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 시설물의 내진성능, 사용성 평가 (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포함 시행 ·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정 |
| <p>사. 종합평가</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
| <p>아. 보수·보강 방법</p> | <p>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내진성능 평가 후 내진능력 부족시의 경우를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
| <p>자.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
| <p>차. 부록</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지시서 · 외관조사망도 ·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

| 구 분 | 내 용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 • 기타 참고자료(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

[별표 19] 성능목표 설정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제51조제2항 관련)

| 구분 | | 고려사항 | | | |
|-----------|------------------|--------------------------------|---------------------|---------|-------|
| | | 사용성 및 기능성 | 주변 환경 | 지진구역 계수 | 공용 연수 |
| 교량 | 도로교량 | 일교통량, 중차량통행량, 차단시 우회거리 | 동해환경, 해안이격 거리, 강설일수 | 공통 | 공통 |
| | 철도교량 | 일통과량, 평균속도 | | | |
| 터널 | 도로터널 | 일교통량, 차단시 우회거리 | | | |
| | 철도터널 | 일통과량, 평균속도 | | | |
| 항만 | 계류시설 | 연간 화물량(백만톤 GT), 하역능력(천톤), 접안능력 | | | |
| 댐 | 다목적댐 | 연평균 저수용량 | | | |
| 건축물 | 공항청사 | 연간 이용객 수 및 항공기 운항 편수 | | | |
| 하천 | 하구둑, 수문 및 통문, 제방 | 성능평가 세부지침 참조 | | | |
| 상수도 | 광역상수도 | 가동률 | | | |
| 옹벽 및 절토사면 | 옹벽 및 절토사면 | 성능평가 세부지침 참조 | | | |

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부적정(“불량“
또는 “매우 불량“으로 평
가된 경우에 한정한다. 이
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통
보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
· 유지관리업자 · 국토안
전관리원 · 관리주체(이하
“점검 · 진단실시자“라 한
다)가 실시한 정밀안전점
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부적정으로 통보 받은 날
로부터 향후 1년간에 한정
하며, 실시시기는 용역 준
공일을 기준으로 한다)

2. ~ 4. (생략)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
령을 위반한 관리주체, 국토안
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가 정밀안전점검
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
으로써 부실 점검 · 진단의 우
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생략)

제78조(평가결과 보고 등) ① (생
략)

----- 안전진단전문기관
· 안전점검전문기관 · 국
토안전관리원 · 관리주체-

2. ~ 4. (현행과 같음)

5. -----

안전점검전문기관이 -----

6. (현행과 같음)

제78조(평가결과 보고 등) ① (현
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평가결과를 검토한 후 영 제14조제5항에 따라 해당시설물 관리주체와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국토안전관리원(이하 “점검·진단기관”이라 한다) 및 지도·감독기관(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한다. 이 경우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공동으로 도급 받아 수행한 점검·진단기관에게는 각각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 ⑦ (생략)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 완료 후 그 결과를 지도·감독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2조(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① ~ ④ (생략)

⑤ 관리주체 또는 점검·진단기관이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

② -----

----- 안전진단
전문기관·안전점검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

-----.

③ ~ ⑦ (현행과 같음)

⑧ -----

----- 시설물 관리주체와 점검
·진단기관-----
-----.

제82조(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기관의 장은 법 제59조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이행을 권
고하고자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6조(교육훈련 대상자) 교육기
관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기술자의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
상으로 한다.

1. ~ 3. (생략)
4. 시설물 유지관리업체 종사자
5. (생략)

----- 권
고하거나-----
--.

제86조(교육훈련 대상자) -----

-----.

1. ~ 3. (현행과 같음)
4. 안전점검전문기관 -----
5. (현행과 같음)